

# 축산인의 세무상식 ②

## 경리과 이 충 선

(서울우유협동조합)

### 1. 축산업 조세감면의 변천과 현행 감면 방법

가. 축산업의 조세감면은 69년부터 76년까지는 목장개시(소득발생년도) 연도부터 6년간은 100%감면, 그후 2년간은 50%로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나. 77년부터 81년까지는 목장개시(소득발생년도) 연도부터 4년간은 100%감면, 그후 2년간은 50%로 감면 기간이 단축되었고

다. 82년도에는 목장개시(소득발생년도) 연도부터 6년동안 50%의 소득공제로 변경되고

라. 83년도에는 목장개시 6년동안 20%의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것으로 대폭 줄어든 대신에 농가부업소득(농가부업소득 범위 참조)의 비과세 범위가 젓소 10두, 소 20두에서 젓소 20두, 소 30두까지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마.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 3항에 의하여 세법 개정전(82년 12월31일)에 목장을 개시한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소득공제 명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 목장 양도소득세 면제

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할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음표에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그러나 다음표에 제기하는 사유 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표 1. 축산업 감면 기간표

| 목장개시연도     | 감 면 기 간 |    |    |    |    |    |    |    |    |    |    | 비 고                               |
|------------|---------|----|----|----|----|----|----|----|----|----|----|-----------------------------------|
|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
| '78년 목장개시자 |         |    |    |    |    |    |    |    |    |    |    | —— : 50% 소득공제<br>..... : 20% 소득공제 |
| '79년 "     |         |    |    |    |    |    |    |    |    |    |    |                                   |
| '82년 "     |         |    |    |    |    |    |    |    |    |    |    |                                   |
| '83년 "     |         |    |    |    |    |    |    |    |    |    |    |                                   |
| '82년 "     |         |    |    |    |    |    |    |    |    |    |    |                                   |
| '83년 "     |         |    |    |    |    |    |    |    |    |    |    |                                   |

① 다음표(표 2)에 제기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한다.

다.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으자가 위 ①②호의 기한내에 당해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날이 속하는 과세 기준 확정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양도소득 감면신청서”(소득세법 별지 제37호 서식)와 구목장 목축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신목장 목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당해 자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목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목장 목축명세를 구목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2.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 사 업 별                      | 사육성취두수 | 면 세 범 위           |
|----------------------------|--------|-------------------|
| 한우·육용우·사육사업                | 20두    | 두당 1,150평방미터      |
| 유우·사육사업                    | 20두    | 두당 2,300 " (696평) |
| 양·사슴·사육사업                  | 200두   | 두당 230 "          |
| 돼지사육사업                     | 100두   | 두당 13 "           |
| 토끼(친칠라 및 핑크돌 포함한다) 사육사업    | 500수   | 수당 3 "            |
| 가금사육사업(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 1,000수 | 수당 3 "            |

### 3. 토지 양도소득세 면세

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과수원포함)

나. 8년이상이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인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가산한다.

### 4. 젓소 20두 소 30두이하 사육목장의 소득세 비과세 방법

가. 83년도 시행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농가 부업 축산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82년도에는 젓소 10두 소 20두였으나, 83년도부터 젓소 20두, 소 30두로 확대되므로써 이 범위에 해당되는 축산업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있는 목장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이라든가 또는 비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무관서와 축산업자간에 많은 마찰을 야기시켜 왔고 세법 지식이 미약한 축산인만이 불리한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나. 세법규정을 보면 “농가부업소득이라함은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즉 국세청 소득1264-3468(83. 10. 11)에 의하면 농가의 농민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소득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 젓소 20두나 소 30두를 사육하는 목장은 농가의 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소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소득세 신고 등을 할 의무는 없으나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 과세에 해당하는 지 사실 확인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 농가 부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농가부업 소득규모(젓소 20두 소 30두)의 증명

㉠ 농가부업 축산의 규모는 젓소 20두 소 30두 이하이므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가축자가육성 증명”에 사육두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발급받아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은후 읍, 면, 동장이 발행) 첨부한다.

㉡ 별표와 같은 “가축자가사유 내용”을 목장에 비치하고 매월말 기장하여 이것을 복사하여 첨부토록 한다.

② 축산업자가 농민이냐에 대한 시비.

㉢ 실제 전, 답을 경작할 경우에는 “자경농지

증명”(읍, 면장발행)이나 “농지세납부서”를 제출하면 되겠으나

㉔ 전, 답을 경작하지 않고 축산만 할 경우에도 국세청소득 1264-67 (83. 1. 10)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농민에 대한 범위는 농무관계부서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였고 농무관계부서란 “농수산물”을 지칭하는 바 대한민국 법률중 농민의 정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농수산부 산하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만 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축산인도 농민이라 되어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 1 조 농민의 범위는 대가축 1두, 중가축 3두, 소가축 20두, 가금 30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로 되어 있음)

㉕ 재무부 간세 1235-675호 (79. 3. 12)에 의하면 농민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조와 2 조를 참고토록 한바 이것도 상기와 일치하므로 조세정책을 주관하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다같이 축산업자가 농민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표 3. 농가 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제 6 조의 2 관련)

| 가축별 | 규 모     | 비 고                         |
|-----|---------|-----------------------------|
| 젓 소 | 20마리    |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
| 소   | 30마리    |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 돼 지 | 150마리   |                             |
| 산 양 | 150마리   |                             |
| 면 양 | 150마리   |                             |
| 토 끼 | 3,000마리 |                             |
| 닭   | 3,000마리 |                             |
| 오 리 | 3,000마리 |                             |

㉖ 또 앞의 ㉔번과같이 전업이라도 비과세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전, 답을 경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일부 세무서에서는 전, 답을 경작하여야만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

마. 축산업자중 일반과세자 (젓소 20두 소 30두이상)은 1월 25일까지 목장관할 세무서에 “총 수입 금액”을 신고 하여야 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할 총

(별표) 가축자가사육 내용

| 목 장 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육 내 용 |      |     |    |    |
|----------|-----|--------|---------|------|-----|----|----|
| 사업장주소    |     |        |         |      |     |    |    |
| 거주지주소    |     |        |         |      |     |    |    |
| 구분<br>월별 | 유 우 |        | 계       | 환산두수 | 비육우 | 기타 | 비고 |
|          | 성 우 | 육성우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계        |     |        |         |      |     |    |    |
| 평 균      |     |        |         |      |     |    |    |

- \* 1. 성우란에는 착유두수를 기재하고 육성우에는 성우이외의 육성우를 기재하며 제란에는 성우와 육성우의 합계를 매월말일 기재한다.
- 2. 세법에서는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산 두수”란에는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계산하고 성우는 그대로 1두로 계산하여 기재한다. 즉 성우 10두, 육성우 12두(계 22두)일 경우 환산두수는 16두이다.

수입금액은 1월에 신고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2월중에 심사하여 세대장에 기록하고 납세자(축산업자)에게 이를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농가부업 소득으로 비과세 축산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농가부업으로 비과세라는 것을 표시하고 상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바. 여러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각 종류의 가축 규모가 농가 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이하이면 비과세이다. 즉, 젓소 18두, 소 25두, 돼지 130마리, 닭 2,500수를 동시에 사육하여도 모두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종류의 사육가축이 그 범위를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사육가축도 모두 과세가 된다.